

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4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2002. 04. 13.
제출자 파주시장

□ 제안이유

환경부에서 하수도법 개정('01.3.28)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(환경부 훈령 제509호 : '02.1.14)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하수도 사용조례 제1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준공시 구비서류에 배수설비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,중,후 사진을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함.(안 제5조제1항)
- 기타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·개축·수선 및 유지관리비 기타비용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 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비용으로 구체화함.(안 제8조제6호)
-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하수발생량 산정방법,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,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등을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함.(안 제18조제3항)
- 사용료·점용료·원인자부담금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9조제2항 신설)

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중 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”을 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·중·후의 사진을 첨부하여”로 한다.

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비용

제18조제2항제4호 후단중 “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“제2항제2호”에”를 “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의 “제2항제1호”에”로 하며,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“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”를 “시설물의 착공후 부터 완공전에 징수하며”로 한다.

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(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 설계 보고서상의 수량,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)
2.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
3.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

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할수 있다.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별표 1-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중 구비서류란 “준공검사 신청서, 배수설비 시공도면”을 “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·중·후의 사진 각 1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

업 종	구 분 내 용
가 정 용	· 전용 또는 공업급수전에 의하여 가정용으로 급수하는 것 · 담배·연탄·양곡·문방구·지물·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· 신문보급소,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·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
업 무 용	· 사설소화전 · 시립위탁시설(청소년회관,체육시설에 한함) · 사회구호단체,원호단체,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·허가를 받아 설치·운영하는 시설 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) · 학교 · 정당 · 농협,축협,수협,산림조합,한국은행,정부투자기관,전용전에 의한 철도용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비영리수영장,교회,사찰,국·공립대학부속병원(국가,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) · 병영 · 신문사,방송국 ·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· 급수탑에 의한 급수(단,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), 공설 소화전 ·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·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

업 종	구 분 내 용
영 업 용	· 식품접객업,공연장,숙박업 · 유기장,오락장,노래방 · 백화점,도매센타,대규모소매점,대형점,시장(상가포함) · 차량판매· 정비업(검사장포함),주차장,세차장,주유소(석유판매소 제외),운송 또는 관광업(창고보관업 포함) · 음식점 · 학원(도서실 포함,피아노 개인지도 제외) · 사진현상소 · 체육시설업(탁구장업,체육도장업,바닥면적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) · 금융기관(보험,증권회사,신용금고 등 포함,전당포 제외) · 발전소 · 이발소(미장원포함) · 병원 · 인쇄소,출판사(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) · 화훼,식목업 · 빌딩(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 건물),오피스텔 · 도살장,정육업 · 양조업,제빵업,제분업(방아간 포함),제당업,청량음료 제조업,의약품,화공약품,화장품제조업,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,합성수지제조업,페인트류제조업,가구류 제조업(자재가공포함),연료제조(고압가스제조업포함) ·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,식료품제조가공업,피혁제조가공업,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· 도금업(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) · 제재소,목공소(목공소 제외) · 요업(시멘트 가공제품,초자제품 포함) ·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(단,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,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제외) ·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(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)

업 종		구 분 내 용
영업용		·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(단, 최종단계 요율적용) ·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
욕탕용	1종	· 공동탕에 대한 급수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
	2종	· 특수목욕장업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 · 바닥면적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림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· 가족탕업,한증막업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 ·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
산업용		·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

- 주 1.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,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.
2.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.
3.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.

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

□ 원인자부담금 =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+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

○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

$$= \text{m}^3\text{당 원인자 부담금(원/m}^3\text{)} \times \text{하수발생량(m}^3\text{/일)}$$

※ m³당 원인자부담금

$$= \text{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} \times 1 / \text{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(m}^3\text{/일)} \times \alpha$$

※ 총사업비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,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

※ m³ 원인자부담금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계산방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매년공고(공보)

○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= 하수관거 총사업비 ×

$$\text{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(m}^3\text{/일)} / \text{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(m}^3\text{/일)} \times \alpha$$

※ 총사업비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,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

$$\alpha: (1 + \text{공공하수도 설치완공후 년평균 도매물가상승률} / 100)^n$$

n : 공공하수도 설치완료 이후 경과년수

신 · 구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제5조(배수설비 준공검사)① -----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----- -----	제5조(배수설비 준공검사)①-----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·중·후 의 사진을 첨부하여 -----
제8조(공공건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) (생략)	제8조(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) (현행과 같음)
1~5(생 략)	1 ~ 5(현행과 같음)
6.기타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·개축· 수선 및 유지관리비, 기타비용	6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 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비용
제18조(원인자부담금)①(생략)	제18조(원인자부담금)①(현행과 같음)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
1~3(생략)	1~3(현행과 같음)
4. -----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“제2 항제2호” -----	4.-----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“제2항제1호” -----
가~나(생략)	가~나(현행과 같음)
③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 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·분 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 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 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 기준(한국산업규격 KS F1507)에 의한다.	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 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 1.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(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 설계 보고서상의 수량,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

현행	개정
④원인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장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 제19조(가산금)①생략 ②<신 설>	<u>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방법)</u> <u>2.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</u> <u>3.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</u> ④----- ----- <u>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며</u> ----- ----- 제19조(가산금)①(현행과 같음) <u>②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할수 있다.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</u>